「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」

일부개정 2022. 10. 31. 규정 제882호

1. 개정사유

- 교원, 직원·조교, 학생·동문의 투표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70:20:10로 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.
- 학생·동문선거인의 참여범위와 투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-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'대학회계직원'을 「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」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의와 동일하게 '대학회계 무기직원 및 대학자체직원'과 '산학협력단 직원(무기계약직)'을 포함 하도록 수정함.(안 제4조제1행)
- 직원·조교선거인의 투표비율을 '교원인선거인의 100분의 14'에서 '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28.5714'로 수정함.(안 제6조제1항)
- 학생·동문선거인의 투표비율을 '교원인선거인의 100분의 6'에서 '교 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4.2857'로 수정함.(안 제8조제1항)
- 「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」제14조제3항에 따른 학생선거인의 참여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7조제1항)
- 「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」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문선거인의 참여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7조제2항)
- 학생·동문선거인의 투표비율(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4.2857) 중 학생선거인 및 동문선거인의 개별 투표비율을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1항)
-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선거사무위탁협약에 따른 선거사무 관련 규정을 개정함. (안 제16조제3항)
- '교원인 선거인', '직원인 선거인', '선거일 공고일 등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. (안 제4조제2항, 제5조제2항, 제22조제3항)

3. 주요 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: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, 「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」제3조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붙 임:개정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개정문

[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직원인 선거권자)"를 "(직원선거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(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)"를 "(대학회계 무기직원 및 대학자체직원을 포함한다) 및 「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제8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원(무기계약직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직원인 선거인(이하 "직원선거인"이라 한다)"을 "직원선거인"으로 하다.

제5조의 제목 "(조교인 선거권자)"를 "(조교선거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선거인 공고일"을 "선거공고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조교인 선거인(이하 "조교선거인"이라 한다)"을 "조교선거인"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직원·조교 선거인"을 "직원·조교선거인"으로, 같은 조 제1항 중 "직원·조교 선거인"을 "직원·조교선거인"으로, "교원인 선거인(이하 "교원선거인"이라 한다) 수의 100분의 14"을 "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28.5714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직원·조교 선거인"을 "직원·조교선거인"으로 하며, 예시 부분 중 "114명"을 "121명"으로, "15.96표"를 "34.5714표"로, "직원·조교선거인"을 "직원·조교선거인"으로 "15.96×100/167=9.5569표"를 "34.5714 × 100/167 = 20.7014표"로 한다.

제3장제2절의 제목 "<mark>학생 선거권 등</mark>"을 "학생·동문 선거권 등"으로 한다.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학생·동문선거인) ① 선정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생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, 학과별 인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구성(이하 "학생비례선거인단"이라 한다)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
- 1. 학생비례선거인단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발한다.
- 2. 학생비례선거인단의 인원수는 학과별 인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(소수의 경우,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)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다.

예시)				
구 분	학과명 등	선거공고일 기준 재학생수	5% 인원수	학과별 학생비례선거인수
	체육학과	959	47.95	48
	경기지도학과	55	2.75	3
	노인체육복지학과	175	8.75	9
	스포츠산업학과	136	6.8	7
학부	사회체육학과	309	15.45	16
	특수체육교육과	128	6.4	7
	운동건강관리학과	163	8.15	9
	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	157	7.85	8
	태권도학과	157	7.85	8
	공연예술학과	145	7.25	8
대학원	대학원	616	30.8	31
月				154

3. 제2호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, 해당학과는 추첨 없이 모두 선발하고 미달된 인원은 따로 선발하지 않는다.

- 4. 제1호에 따른 모집 및 선발시 ,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2명의 참관 하에 총학생회에서 정한 세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.
- 5. 학생비례선거인단 선발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선발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6. 학생비례선거인단으로 선발된 자는 그 선발사실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대상으로서 선거인의 지위를 갖는다.
- ② 선정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문선거인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를 졸업한 동문 100명의 인원수로 구성(이하 "동문비례선거인단"이라 한다)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 - 1. 동문비례선거인단은 선거공고일 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발한다.
 - 2. 동문비례선거인단의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, 추첨 없이 모두 선발하고 미달된 인원은 따로 선발하지 않는다.
 - 3. 제1호에 따른 모집 및 선발시,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2명의 참관 하에 총동문회에서 정한 세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.
 - 4. 동문비례선거인단 선발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선발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 - 5. 동문비례선거인단으로 선발된 자는 그 선발사실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대상으로서 선거인의 지위를 갖는다.
- 제8조의 제목 "(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 환산방법)"을 "(학생·동문선거인 의 투표결과 환산방법)"으로 한다.
-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<mark>학생선거인</mark>"을 "학생·동문선거인"으로 한다.
 - ① 학생·동문선거인의 투표비율은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4.2857로 하며, 학생선거인과 동문선거인의 개별 투표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 - 1. 선거공고일 7일 전까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 - 2. 제1호에 따른 상호 협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, 선거공고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는 선정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하여 정한다.
- 제9조 중 "선거일 <mark>공고일</mark>"을 "선거공고일"으로, "작성한다"를 "동문선거인 명부는 총동문회에서 각각 작성한다"로 한다.
- 제16조제3항 중 "정보통신망 등으로 정해진 기일에 배포하여야 한다"를 "관할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동봉하여 배포한다"로 한다.
- 제22조제3항 중 "선거일 공고일"을 "선거공고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학생순"을 "학생, 동문순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제25조제5항"을 "제25조제4항"으로 한다. 별지제11호서식 중 "교원·직원·조교·학생"을 "교원·직원·조교·학생·동문"으로 한다. 별지제12호서식 중 "선거일공고일"을 "선고공고일"으로 한다

부 칙 (제882호, 2022. 10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) 이 시행세칙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 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		
제4조(직원인 선거권자) ① 직원이란 총장이	제4조(직원선거인) ①			
임용발령을 하는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				
한다)에 재직한 공무원인 직원 · 대학회계직원				
<u>(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)</u> 을 말한다.	(대학회계 무기직원 및 대학자체직원을 포함한다 및			
	「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제8조에			
② 직원인 선거인(이하 "직원선거인"이라	<u>따른 산학협력단 직원(무기계약직)</u> ② 직원선거인			
한다)은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	<u> </u>			
선거권을 가진다.				
제5조(조교인 선거권자) ① 조교란 <u>선거인</u>	제5조(조교선거인) ① 선거공고일			
<u></u> <u>공고일</u> 현재 총장이 임용발령하여 본교에				
공무원인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				
② 조교인 선거인(이하 "조교선거인"이라	② 조교선거인			
한다)은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				
선거권을 가진다.				
제6조(직원·조교 선거인의 투표결과 환산방법)	제6조(<u>직원·조교선거인</u> 의 투표결과 환산방법)			
① 직원·조교 선거인(직원선거인과 조교	① <u>직원·조교선거인</u>			
선거인을 합산한다)의 투표비율은 교원인	<u>교원</u>			
<u>선거인(이하 "교원선거인"이라 한다) 수의</u> 100분의 14로 한다.	<u>선거인 수의 100분의 28.5714</u>			
100분의 14도 한다. ② 직원·조교 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제1항에	 ② 직원·조교선거인			
따라 인정된 직원·조교 선거인의 총투표	직원·조교선거인			
수를 직원·조교의 총선거인수 분의 후보별				
유효득표수의 비율로 배분하되 정수를 우선				
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				
(소수점 이하 5자리는 절사)하여 큰 순서				
부터 잔여분을 배정한다.				
예시) 교원선거인 수가 <u>114명</u> 인 경우 직원·	예시) <u>121</u> 명			
조교선거인에게 인정되는 총 투표 수는 15.96표이다. 직원 ·조교 총	34.5714丑			
선거인 수가 167명, A후보의 직원·	<u> </u>			
조교 선거인 유효 투표수가 100명인	 조교선거인			
경우 A후보의 직원·조교 득표수는				
<u>15.96 × 100/167=9.5569표</u> (후보별 소스전 이렇 4자리까지 게사하여	<u>34.5714 × 100/167 = 20.7014⊞</u>			
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여 큰 순서부터 잔여 표를 추가 배정)				

원 위	ની જો				
현 행	개정				
제2절 <u>학생</u> 선거권 등	제2절 <u>학생·동문</u> 선거권 등				
제7조(학생인 선거권자) ① 학생이란 선 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 는 학생(학부생, 일반대학원생 및 특수대 학원생)을 말한다.	제7조(학생·동문선거인) ① 선정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생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, 학과별 인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구성(이하 "학생비례선거인단"이라 한다)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 1. 학생비례선거인단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개모집 후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발한다. 2. 학생비례선거인단의 인원수는 학과별인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모두합산하여 산정(소수의 경우, 소수점첫 번째 자리에서 울림)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다. 대시) 구 분 학과명등 (선거공교일 제학생수 학과별 인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모두합산하여 산정(소수의 경우, 소수점첫 번째 자리에서 울림)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다. 대시) 구 분 학과명등 (선거공교일 제학생수 학과별 학생비례 전거인수 제당하여 산정(소수의 경우, 소수점첫 번째 자리에서 울림)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다. 대시) 구 분 학과명등 (선거공교일 제학생수 학과별 학생비례 전거인수 제당생수 등등 2.75 3 1년 전공산업학과 136 6.8 7 1년 조산업학과 136 6.8 7 1년 조산업학과 136 6.8 7 1년 조산정산업학과 136 6.8 15 9 1년 조산정학과 136 6.8 15 9 1년 조산학과 136 6.8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				
	총학생회에서 정한 세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.				
	5. 학생비례선거인단 선발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선발사실을 대상자에게				

현 행	개 정
	통보한다.
	6. 학생비례선거인단으로 선발된 자는
	그 선발사실을 통보받은 때로부터
	선거운동의 주체 및 대상으로서
	선거인의 지위를 갖는다.
② 학생인 선거인(이하 "학생선거인"이	② 선정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문
라 한다)은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에	선거인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를 졸업한
따라 선거권을 가진다.	동문 100명의 인원수로 구성(이하 "동문
	비례선거인단"이라 한다)하며, 다음 각 호
	에 따라 정한다.
	1. 동문비례선거인단은 선거공고일 후
	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개
	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
	<u>발한다.</u>
	2. 동문비례선거인단의 인원수보다 적은
	수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, 추첨 없이
	모두 선발하고 미달된 인원은 따로
	선발하지 않는다.
	3. 제1호에 따른 모집 및 선발시, 총장
	임용추천위원회의 2명의 참관 하에
	총동문회에서 정한 세부 방법과 절차에
	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.
	4. 동문비례선거인단 선발일로부터 3일
	이내 그 선발사실을 대상자에게
	통보한다.
	5. 동문비례선거인단으로 선발된 자는
	그 선발사실을 통보받은 때로부터
	선거운동의 주체 및 대상으로서
	선거인의 지위를 갖는다.
제8조(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 환산방법)	제8조(학생・동문선거인의 투표결과 환산방법)
① 학생선거인의 투표비율은 교원선거인 수의	① 학생・동문선거인의 투표비율은 교원선거인
<u>100분의 6으로 한다.</u>	수의 100분의 14.2857로 하며, 학생선거인과
	동문선거인의 개별 투표비율은 다음 각
	호에 따라 정한다. 1. 선거공고일 7일 전까지 총학생회와
	<u>1. 신거공고월 7월 선까지 중약생외자</u> 총동문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	2. 제1호에 따른 상호 협의가 이행되지
	않는 경우, 선거공고일 전까지 추천

현 행	개 정
② <u>학생선거인</u> 의 투표결과 산정방법은 제6 조제2항의 직원·조교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을 준용한다.	위원회는 선정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하여 정한다. ② 학생·동문선거인
제9조(선거인명부 작성)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원선거인명부는 교무과(교무팀), 직원선거인 명부는 총무과 (총무팀), 조교선거인 명부는 교무과 (교무팀), 학생선거인 명부는 훈련학생총괄팀 (입시학생팀) 및 대학원에서 <u>작성한다</u> .	제9조(선거인명부 작성)선거 공고일
제16조(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) ① ~ ② (생 략) ③ 선정규정 제25조에 따른 선거 공보물은 추천위원회에서 선거권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으로 정해진 기일에 배포하여야 한다.	제16조(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
제22조(선거공보) ① ~ ② (생 략)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0일 전까지 예상 선거인수,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, 선거공보의 확인일자 및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(안)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,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작성 및 제출 수량, 제출장소, 제출기한을 통보한다.	제22조(선거공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
④ (생 략) 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등재순(교원, 직원, 조교, 학생순)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. ⑥ 추천위원회가 선정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가 우송하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 우편함을 이용하여 발송할수 있고, 그 준비 및 필요한 사항은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관할선관위와 협의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	④ (현행과 같음) ⑤
전거공보를 관할선관위에 인도한다.	

현 행 개 정

부 칙(제882호, 2022. 10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) 이 시행세 칙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 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.

[별지 제11호서식]

〈표 지〉

년 월 일 실시 한국체육대학교 제○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

선거인명부(교원・직원・조교・학생)

작 성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: 년 월 일

○○대학(원)(○책 중 ○권)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①

 동재번
 소속
 성별
 생년월
 성명
 부표용지수련인©
 비고

 ①
 ②
 ③
 ④
 ●
 4
 1
 1
 1
 1
 2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
 1</

주: 1. 명부기재방법

- ① "등재번호"칸에는 선거인구분(교원, 직원, 조교, <u>학생을</u> 말한다) 및 소속 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, 나, 다순(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 년월일순)으로 적습니다.
- ② ~ ⑧ (생 략)

<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>

- (1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일까지 작성하고 책으로 (분철)작성하였음.
-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①
 (2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○○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.
-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(3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.
 -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①

주: (3)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.

[별지 제11호서식]

〈표 지〉

년 월 일 실시 한국체육대학교 제○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

선거인명부(교원・직원・조교・학생・동문)

작 성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: 년 월 일

○○대학(원)(○책 중 ○권)

한국체육대학교

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

	<내 지>	,							
Γ	등재번	등재번 소속	성 별 ③	생년월	성 명 ⑤	투표용지수령인⑥			비교
	<u>\$</u>	2		일 ④		제1차 투표	제2차 투표	결선 투표	7
E									
ſ									

주: 1. 명부기재방법

- ① "등재번호"간에는 선거인구분(교원, 직원, 조교, <u>학생, 동문을</u> 말한다)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, 나, 다순(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)으로 적습니다.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<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>

- (1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일까지 작성하고 책으로 (분철)작성하였음.
-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①
 (2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○○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.
-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(3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.
 -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
- 주: (3)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.

현 행 개정 [별지 제12호서식] [별지 제12호서식]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선 거 인 명 부 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(%)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(%) 구 성 원 수 (년 월 일 현재) 구 성 원 수 (년 월 일 현재) 비고 비고 주: 구성원수는 <u>선거공고일</u>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. 주: 구성원수는 <u>선거일공고일</u>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.